

박지연 · 배경내 · 이묘랑

이은선 · 최유경 지음



## 분야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

## 키워드

#청소년 시민권 #청소년 참정권 #민주시민교육 #정치 #정당 #학생인권

## 책 소개

《우리는 청소년-시민입니다》는 ‘내 삶을 설명할 언어를 만난 적 있나요?’, ‘광장은 광화문에만 있나요?’, ‘정당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이 있다고요?’, ‘교육만 바뀌면 청소년의 삶이 좋아질까요?’, ‘학생이 아랫사람인가요?’ 등 열한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청소년이 어떤 일상을 마주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그리고 ‘청소년’과 ‘시민’, 두 단어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청소년 당사자가 가진 힘과 그에 응답해야 할 비청소년의 역할에 주목한다. 한국 청소년 운동의 역사를 아우르며 우리 사회 청소년 시민권이 당면한 과제를 다양한 청소년의 경험을 통해 전하는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넨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동료 시민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이다.

‘몫’과 ‘권리’를 가진 사람,  
우리는 청소년-  
시민입니다



## 차례



**1차시** 내 삶을 설명할 ‘언어’를 만난 적 있나요?

**2차시** 뭔가 말하고 싶은데 자꾸만 주저하게 되나요?

**3차시** 나를 지지하는 법을 만들어 본 적 있나요?

**4차시** 정치, 그 재미없는 걸 왜 하냐고요?

**5차시** 내 삶을 대변하는 정치를 본 적 있나요?

**6차시** 정당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이 있다고요?

**7차시** 교육만 바뀌면 청소년의 삶이 좋아질까요?

**8차시** 용의복장이랑 시민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들어가며**

1.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순간을 떠오르는 대로 적어 보세요.

예) 내가 입을 옷을 부모님이 정할 때, 교복 위에 사복을 입었다고 지적받았을 때, 의견을 말했는데 말대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등

2. 그때 느꼈던 나의 감정은 어땠는지 **모두** 표시해 보세요.

**걱정이 되는 / 신경 쓰이는 / 주눅 든 / 불안한 / 불편한 / 답답한 / 짹짹한 / 슬픈 / 서러운 /  
섭섭한 / 심심한 / 외로운 / 허전한 / 쓸쓸한 / 우울한 / 무감각한 / 약 오르는 / 억울한**

\* 적절한 감정 예시가 없다면 빈칸에 직접 작성해 주세요!

**내용 확인하기**

1. '학생인권'이라는 언어를 통해 다시 보게 된 학생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22쪽)

2. 어떤 문제에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동학대, 가스라이팅, 데이 트폭력, 교제 살인' 등의 문제에 사회적 이름이 붙자 어떤 변화가 만들어졌는지 찾아 정리해 보세요.(23~26쪽)

## 생각 넓히기

1. 일상에서 무언가 불편함이나 답답함을 해소하려면 적절한 언어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을 읽고 자기 언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의견을 말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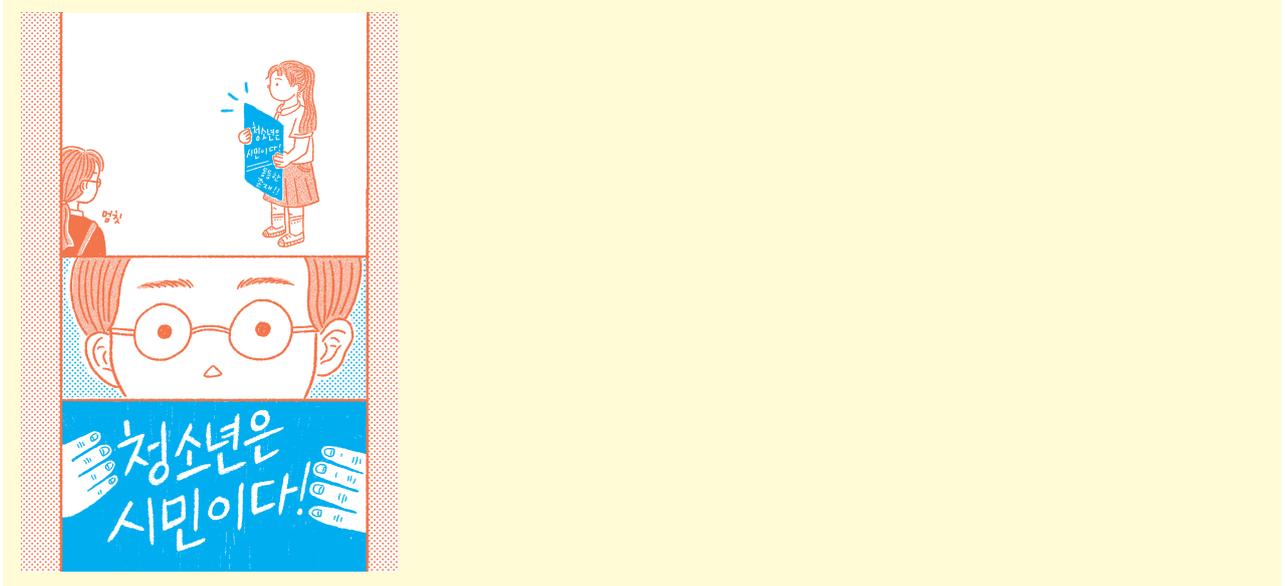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내가 참고 넘겼던 사소한 불편함을 ‘인권 문제’라고 말해 줬던 사람들을 만났어요. 내가 무심코 던진 농담이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혐오 표현이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 그전까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말은 분명 좋은 말이었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에게는 인권이 있다’고 믿는 인권 활동가를 보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오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느껴졌고요. 하지만 누군가 일상 속 인권 이야기를 들려 준 덕분에 내 인권이 침해받기도, 내가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한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인권에 대해 말하면 할수록 우리 일상의 작은 장면 장면이 변화해요. 인권을 이야기하면 불만이 많고 예민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게 왜 인권 문제야’라는 의문을 품은 시선을 맞닥뜨릴 거예요. 그런데도 인권을 이야기한다는 건 그런 편견과 시선에 굴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일이죠.

출처: 양지혜, 《잠깐! 이게 다 인권 문제라고요?》, 곰곰, 2021, 5~6쪽

## 활동하기

1. 28쪽에 실린 그림처럼 여러분에게도 ‘청소년은 시민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적어 봅시다.



2. 저자는 청소년이 시민으로 살기 위해 ‘내 시간의 주인이 될 권리’, ‘눈치 보지 않고 꾸밈 권리’, ‘자유로이 의사 표현을 할 권리’, ‘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고 답변을 들을 권리’, ‘투표에 참여하고 정치에 대해 말할 권리’ 등의 구체적인 권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권리가 필요한지 적어 보세요.



## 생각 넓히기

다음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진행한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의 내용을 살펴본 뒤 아래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적어 봅시다.

일상 언어 속 나이 차별 문제 개선 캠페인

#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어린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킵시다!”

- 01 나이 어린 사람(특히 어린이·청소년)에게 반말, 하대를 하지 마십시오.
- 02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이 어린 사람을 부를 때, 존칭(00님, 00씨 등)을 사용하십시오.
- 03 친한 사이가 아닌 어린이·청소년에게 ‘oo친구’라고 부르지 말고 정중하게 대하십시오.
- 04 어린이·청소년의 몸이나 물건 등에 함부로 손대지 마시고 존중하십시오.
- 05 어린이·청소년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거나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대화, 평가 등을 나누지 마십시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어린이에게 경어를 써 달라”

1922년, 제1회 어린이날부터 시작된 유서 깊은 청소년 인권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주 듣게 되는 일방적 반말(야, 어이, 너),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존칭 없이 하대를 당하거나 무례한 대우를 받는 일(~양/군, ~친구, 투명인간 취급), 어린이·청소년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표현(미자, 금식충, 초딩, 애새끼, ~린이) 등. 어리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차별,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출처: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홈페이지

1. 위 캠페인 포스터에 실린 내용 중 2가지를 골라 그 행동이나 표현이 어린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 봅시다.

(1)

(2)

2. 위 캠페인 포스터에 추가하고 싶은 사례나 새로운 문장을 생각해 봅시다.

## 활동하기

사회에서 청소년을 동등하게 바라보지 않고 '미성숙한 존재', '가르쳐야 할 대상', '아랫사람'으로 대한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떠올려 봅시다.

1. 나를 화나게 한 행동이나 표현 중 '워스트(worst) 3'를 뽑아 아래 표에 적어 주세요.
2. 그때 내가 했거나 하고 싶었던 반박의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보세요.

---

**워스트 ③위**

:

---

↳나:

---

**워스트 ②위**

:

---

↳나:

---

**워스트 ①위**

:

---

↳나:

---

### 3차시 (( 나를 지지하는 법을 만들어 본 적 있나요? ))

#### 들어가기

1.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명령이나 지시, 규정, 법률 등 무엇이든 떠오르는 것을 적어 보세요.

2. 부당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내용 확인하기

1.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필요한 법이나 조례로 뽑은 것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2가지를 뽑고 그 이유를 함께 적어 주세요.(69~70쪽)

|          |               |
|----------|---------------|
| 기억에 남는 것 | 1.<br><br>이유: |
|          | 2.<br><br>이유: |

2. 위에서 뽑은 법이나 조례를 실제 만들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해 아래 방법을 활용할 때 기대할 만한 효과, 그리고 청소년이 활용할 때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찾아 정리해 보세요.(46~77쪽)

| 방법                    | 효과 | 한계 |
|-----------------------|----|----|
| 광장 열기<br>(집회나 캠페인 개최) |    |    |

|                            |  |  |
|----------------------------|--|--|
| 국회나 시의회 의원을 통해<br>법률안 발의하기 |  |  |
| 조례 청구 제도(주민발안) 활용하기        |  |  |
| 국민청원 게시판 활용하기              |  |  |
| 헌법소원 내기                    |  |  |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하기               |  |  |

### 생각 넓히기

다음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청소년이 쓴 글입니다. 글쓴이는 용의복장 규정과 상벌점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생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법이란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지켜야 할 기본 법률인 「초중등교육법」 안에 무엇이 학생인권 침해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학생인권 담당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글쓴이가 지적하는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 참고: '학생인권법을 만들자' 캠페인 사이트 <https://sturights.kr/act>)

나는 그동안 선도부로부터 '복장 불량'으로 수차례 지적을 받아 벌점이 꽤 쌓인 상태이다. 지금까지 내가 벌점을 받은 사유들은 줄무늬가 두 줄 들어간 양말을 신었기 때문에, 까먹고 명찰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추워서 하복 위에 체육복을 걸쳐 입었기 때문에, 즉 사정이나 경우가 어떻든 교칙에 적혀 있는 규정들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별개로 교칙에 없는 규정임에도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셔츠를 바지 안으로 집어넣지 않았거나 조끼의 단추를 잠그지 않았다는 선도부에게 지적을 받고 한다. 이 경우, 교칙에 존재하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벌점을 받지 않지만, 남으로부터 내 몸가짐에 대해 지적받는 과정에는 언제나 불쾌함이 뒤따른다.

벌점이 존재하면 학교 안에서 무언가에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데 불이익을 받고 심지어는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벌점을 만회하기 위한 상점을 얻으려고 봉사활동을 해야 했다. 내가 한 봉사활동은 바로 '교무실 청소'였다. 어떻게 벌점을 줄이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게다가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행동이 '봉사'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교무실을 쓸고, 닦고, 쓰레기통을 비웠다. 그렇게 얻은 상점은 고작 0.5점이었다.

(...) 용의복장 규제 폐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과 법률적 개선이 함께해야 한다. 드디어 2021년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에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로 '학생인권법'이 발의되었다. 이대로 학생인권법이 제정된다면, 이는 학생인권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학교에서 학생이 하나의 인간으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을 날을 기대해 본다.

출처: 레빗, <줄무늬 양말 때문에 교무실 청소... 학교는 변하지 않았다: 고등학생이 경험한 용의복장 규제... 학생인권법이 필요한 이유>, 《오마이뉴스》, 2021. 11. 05

학생인권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2. 다음 동영상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겪는 차별이 사라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뒤,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차별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 차별을 없애는 데 차별금지법이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적어 봅시다.

청소년 참정권 다시 쓰기 2021, 다시 써-프로젝트

지음x나다

# 차별금지법이 학생인권과



# 무슨 상관?

“어른이 될 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 청소년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을 견디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 참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청소년의 머리카락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교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복장 규제는 좀 어떻냐고요? 이것도 조금 나아졌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학생다움, 여성다움, 남성다움을 강요하고, 속옷 색깔에 양말 색깔까지 정해 주는 학교 역시 남아 있습니다. 공부도 못하는 애가 꼭 그런 애기 한다고요? 그럼 성적이 낮으면 차별도 참아야 하나요? 청소년에 대한 차별은 사회 구석구석 퍼져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권조차 없는 청소년의 목소리는 너무나 쉽게 무시당하고 맙니다.

(...) 차별금지법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영역에서 누구도 차별당하거나 배제되지 않기 위한 보호법입니다. 일을 할 때, 교육을 받을 때,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법과 정책에 있어서 성별, 나이, 장애, 신체 조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가지 사유 때문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당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요구하게 되지요. 차별금지법이 차별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순 없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말하기가 시작되는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차별을 바꿔 나가는 도구가 되어 줄 것입니다.



출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유튜브 영상.

'차별금지법이 학생인권과 무슨 상관?'(<https://www.youtube.com/watch?v=VITRCnGHRp4&i=7s>), 2021.10.23.

내가 일상에서 겪는 차별:

차별금지법이 차별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

### 활동하기

1. 법은 청소년이 일상에서 겪는 불평등한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모듈별로 아래 질문 중 한 가지를 골라 법의 내용에 문제는 없는지, 어떤 청소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이 법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토론해 봅시다.

(※ 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관련된 법 내용  | 문제점과 개선 방향 |
|---|---|------------|
| 1. 가출은 불법일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법」 제914조(거소지정권): 자녀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해야 함.</li> <li>·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외: 보호자가 가출을 신고하면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고, 가출 청소년을 보호자에게 인계하여야 함.</li> <li>·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가출이 ‘불법’은 아니지만 가출 청소년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소년보호재판 대상으로 지정함.</li> </ul>  |            |
| 2.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도 괜찮은 건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 제17조와 제18조: 모든 국민에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li> <li>·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가 학생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휴대전화 소지나 수거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없음.</li> <li>·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학교 규칙에 기재할 사항과 제·개정 절차를 규정. 학생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음.</li> <li>·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3조(사생활의 자유): 안전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만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나 압수가 허용된다고 규정. 휴대전화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정함. 서울 지역에만 적용.</li> </ul> |            |
| 3. 학습 부담과 입시경쟁도 법에 정해져 있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와 시행령 제43조(교과): 학교별로 배워야 할 교과목을 나열하고 교육부장관이 필요 교과를 추가할 수 있게 함.</li> <li>·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과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제47조(휴업일 등): 학년 시작일, 수업일수, 방학 등의 기준을 정함.</li> <li>·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와 시행령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고, 일반전형의 경우 ‘경쟁에 의한 선발’을 명시함.</li> </ul>   |            |
| 4. 일자리를 구하거나 임금을 줄 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차별해도 되는 걸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노동자의 모집·채용·업무 등에서 성별, 연령,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을 것을 규정함. 이를 어겨도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없음.</li> <li>·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함. 연령은 언급하지 않음.</li> <li>· 성차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고령자에 대한 차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제 신청이 가능.</li> </ul>   |            |

**들어가며**

요즘 관심 있는 정치나 사회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문제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없다면 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자유롭게 나누어 봅시다.

**내용 확인하기**

1. 2020년 8월, 부산지방법원은 16세 청소년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며 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했습니다. 총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그해 4월, 노동당의 청소년 당원이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sup>(99쪽)</sup> 재판부는 왜 당사자인 청소년이 아닌 위원장에게 선고를 내렸을까요? 해당 재판부는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판단하며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생각 넓히기**

1. 아래의 문장들은 약 100여 년 전, 여성 참정권 운동을 이어 온 서프리지제트\*들이 주변 남성과 사회로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이 문장들을 접하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 봅시다.

(\*: 참정권을 뜻하는 서프리지(Suffrage)에 여성을 뜻하는 접미사 '-ette'를 붙인 말로, 20세기 초 영국에서 일어난 여성 참정권 운동과 그 운동가들을 카리킨다.)

“여자들의 의견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대변할 수 있어.”

“손에 흠도 묻혀 보지 않았으면서 무슨 참정권이야?”

“여성은 판단력이 부족하고 감정적이라 투표를 하기엔 위험해.”

“여성의 본분은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을 다하는 거야.”

나의 생각:

2. 위 문장의 주어를 '여성'이 아닌 '청소년'으로 바꿔 봅시다.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나요? 1번에서 서프러제트에 대해 적은 생각과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또 다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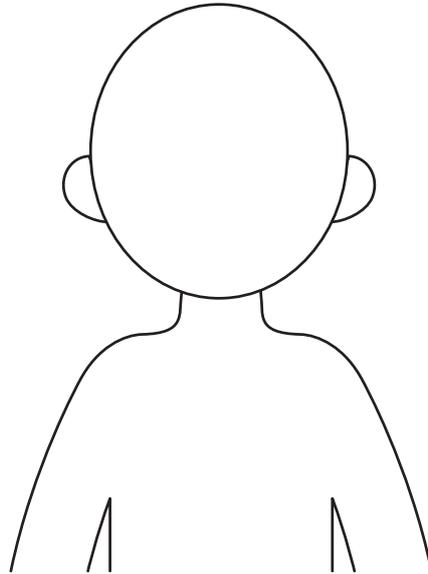
### 활동하기

1. 내가 사는 지역의 교육감 또는 국회의원이 청소년들과 이야기 나누기 위해 찾아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소한 것부터 커다란 것까지 무엇이든, 청소년의 교육 문제 개선을 위해 교육감 또는 국회의원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봅시다. 학생의 권한 강화, 학교환경 개선, 학습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주제와 요구 사항을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 주제 |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것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li><li>•</li></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li><li>•</li></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li><li>•</li></ul> |

**들어가며**

1. ‘국회의원’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나 키워드들을 실루엣 위에 표현해 봅시다. 생김새, 표정, 옷차림, 헤어스타일, 색깔 등 무엇이든 자유롭게 그려 보세요.

**내용 확인하기**

1.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등교가 중단되었던 2020년 5월, 교육부는 학생들의 등교 재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교육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했느냐는 질문에 “학생들의 의견은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처럼 별도의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하지 못했다”라면서 “학부모와 선생님의 의견에 일정 학생의 의견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115~116쪽) 이 결정에는 청소년을 향한 어떤 편견이 숨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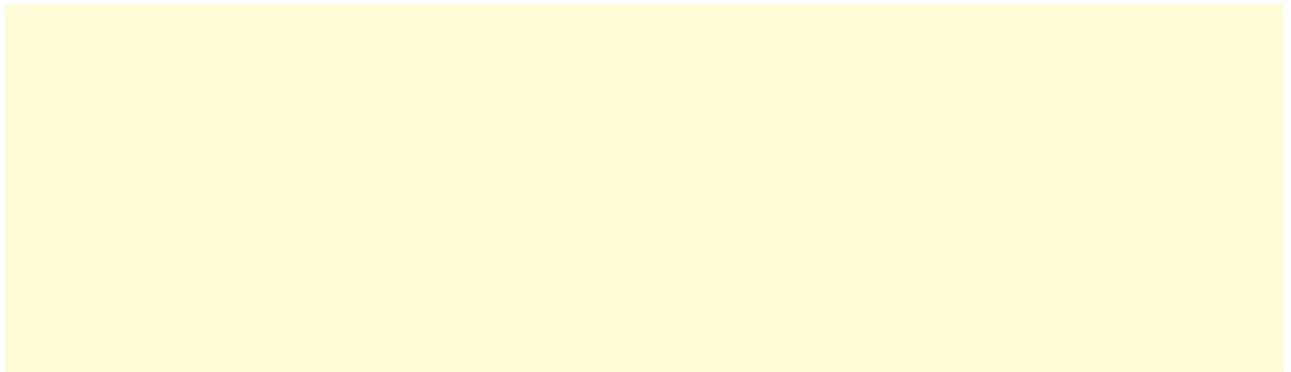
2.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와 강원 지역의 청소년들은 만 18세 선거 연령 하향 이후에 각각 <안녕, 국회>와 <투표하자, 18>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해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과 관련해 이 프로젝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117~120쪽)

3. 위 프로젝트로 확인한 정치의 한계에는 무엇이 있나요?(121쪽)



**생각 넓히기**

1.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연방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홉 명 정원의 대법관 중 몇 명이 여성이 되어야 충분할 것 같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난 언제나 ‘아홉 명’이라고 답한다. 그럼 다들 놀란다. 하지만 이전에 남성 아홉 명이 연방대법원을 이끌었을 때, 그 누구도 의문을 품지 않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판사의 구성이 특정 성별과 나이에서 벗어나 다양해진다면, 판결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모둠별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 봅시다.



2. 다음 글의 저자는 왜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글을 읽고 나는 어떤 경험이 있는 대통령을 원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빈칸을 채워 봅시다.

나는 에어컨이 없는 대통령을,  
병원 앞에서, 교통국 앞에서,  
복지부 사무실 앞에서 줄 서 본 적 있는 대통령을,  
실직자가 되고, 정리 해고된 적이 있는 대통령을,  
성추행당하고,  
동성애자라고 폭행당하고,  
추방된 적이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 조이 레너드, '나는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1992년 미국 대선 기간에 배포된 유인물) 중

나는 \_\_\_\_\_한 적이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그 이유는 \_\_\_\_\_  
\_\_\_\_\_ 때문이다.

### 활동하기

1. 평소 궁금하거나 관심이 있었던 정치인 한 명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 정치인을 직접 인터뷰한다고 생각하고, 해당 정치인이 주장하거나 발의했던 정책들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질문지로 만들어 보세요.

| 만나고 싶은 정치인 | 인터뷰 질문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li><li>•</li><li>•</li><li>•</li><li>•</li></ul> |

**들어가며**

1. ‘정당’ 하면 떠오르는 당이 있나요? 그 정당의 공약이나 활동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활동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생각나는 정당이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 정당 활동을 하는 청소년을 만나거나 미디어에서 접한 적이 있나요?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 정당 활동을 할까요?

**내용 확인하기**

1. 한국의 정당법은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만 18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로 정하고 있는 반면, 독일의 기독교민주연합은 만 16세 이상, 사회민주당은 만 14세 이상, 영국 보수당의 경우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정당 가입 기준을 정당별로 달리 정할 뿐, 법으로는 제한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130쪽~131쪽)

2. ‘애들이 벌써 무슨 정치야?’ 하는 말과 같은 청소년 정치에 대한 편견이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당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현재의 정당 문화가 어떤 점에서 청소년 친화적이지 못하지 정리해 봅시다.(134쪽~138쪽)

## 생각 넓히기

다음 자료를 읽고 생각해 봅시다.

### 정치를 바꾸기 위한 제안

**사표는 줄이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 방향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 ①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방식의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편
- ②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의원 정수 기준 법제화 (국민 14만 5천명당 의원 1인)
- ③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의 최소 50% 이상 또는 100석 이상 확대
- ④ 선거구간 인구 편차 조정으로 약화되는 지역 대표성 보완

#### 방향 2.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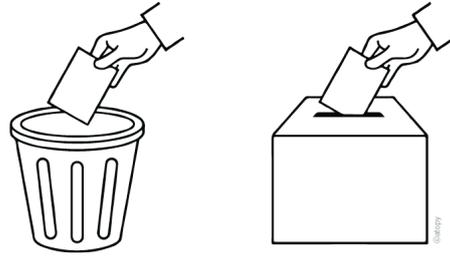
- ⑤ 각 정당의 민주적인 공천 실행 약속
- ⑥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여성 공천비율 30% 이상 의무화
- ⑦ 정당 설립의 요건 완화 전국조직 갖추지 않아도 정당등록 허용
- ⑧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 ⑨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거대정당 보조금 우선 50% 배분원칙 삭제
- ⑩ 기금급 액수 및 반환기준 하향 조정, 지방 정치인 후원금 모금 허용

#### 방향 3.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되찾자

- ⑪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⑫ 사전투표소 설치 확대 및 투표시간 밤 9시까지 연장
- ⑬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후보자 비판 막는 후보자 비방죄 폐지
- ⑭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⑮ 국회 회의 시인 방청 보장 및 공간 개방 회의방청 허가제를 신고제로
- ⑯ 국회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 공개 확대
- ⑰ 국회 청원제도 개선 인터넷 청원접수, 청원안 심사기한 준수

**선거제도 확 바뀌야  
정치가 바뀝니다**

**정당 지지율만큼 국회 의석 배분!  
비례대표 100석 이상 확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electionreform.tistory.com](http://electionreform.tistory.com) 2015. 9. 1.

**국민은 다양한데, 국회의원은 다양하지 않습니다**

청년(19세~39세)은 국민의 30%가 넘는데 청년 국회의원은?

여성은 국민의 절반, 하지만 여성 국회의원은?

장애인은 국민의 5%, 하지만 장애인 국회의원은?

노동자,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이렇습니다**

유권자는 1인 2표(지역구투표 1, 정당투표 1)를 찍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명을 뽑지만, 비례대표는 겨우 47명을 뽑습니다.

정당득표율은, 비례대표 47명을 배분할 때만 적용합니다.

Q. 지금 선거제도에서, 정당득표율 30%인 A정당의 국회 의석수는?

A. A 정당 지역구 당선자 수+ 비례대표 14석(비례정원 47명의 30%)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30명이면 총 44석이거나 지역구 당선자가 60명이면 총 74석입니다. 국민의 정당 지지도가 국회 의석 점유율로 반영되지 못합니다.

## 더 좋은 선거제도가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만큼 의석 배분하고, 비례대표가 많은 방식!

유권자는 1인 2표(지역구투표 1, 정당투표 1)를 찍습니다.

정당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을 정당별로 우선 배정합니다.(1단계)

정당별로 배정받은 의석은 지역구 당선자들로 먼저 채우고, 남은 의석은 비례대표로 채웁니다.(2단계)

Q. 새로운 선거제도가 실시되면, 정당득표율 30%인 A 정당의 국회 의석수는?

(국회의원 정수가 현행과 같이 300명인 경우)

A. A 정당은 90석을 우선 가져갑니다.(300명의 30%)

그 후 지역구 당선자가 30명이면 비례대표로 60석을 보충하고, 지역구 당선자가 60명이면

비례대표로 30석을 보충합니다. 국민의 정당 지지도가 국회 의석 점유율로 반영됩니다.

## 정치와 국회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정당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만큼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 참신하고 새로운 정당이 등장할 수 있고,
- 버려지는 표(사표)를 걱정할 필요가 사라지고,
-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져서 정치가 발전합니다.

출처: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개혁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2018.10.26.

참여연대 홈페이지(<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357226>)

1.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순다수대표제'로 득표수와 관계없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선출됩니다. 한 표라도 더 얻은 1등만이 당선되고 낙선자에게 던져진 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부 유권자들의 의견만 정치적으로 과잉 대표되는 셈이지요. 2017년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만들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위의 글에 나타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와 그것이 국회와 사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 봅시다.

## 활동하기

1. 정당활동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창당을 한다면, 무엇을 위해 활동하는 당을 만들고 싶나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당의 이름과 핵심 공약을 만들어 봅시다.

(※ 정당의 이름은 '통합민주당', '국민의 힘', '정의당'과 같이 그 정당에서 지향하는 가치나 이념을 드러내는 방식도 가능하고, '기본소득당', '녹색당과 같이 그 정당이 추구하는 핵심 목표나 정책이 드러나도록 지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당 이름:

우리 당의 공약:

**들어가며**

1. 다음 중 현재 자신의 고민과 닮아 있는 것이 있다면 골라 보고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

-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급여가 너무 적어요.  
웁고 싶어도 청소년들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곳을 찾기 힘들어요.
- 집값이 자주 오르니까 이사를 자주 다녀요.
-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계좌도, 카드도 만들 수가 없어요.
- 집회에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학교가 못 가게 막아요.
- 환경 문제가 심각해져서 우리가 지구에서 오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예요.
-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기가 어려워요.
- 억울한 일을 당해서 경찰서에 갔는데, 부모님(보호자)을 모셔오래요.
-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안에 서명하려고 했더니 청소년이라서 할 수 없대요.

나의 고민과 닮아 있는 이유:

**내용 확인하기**

1. 2020년 5월 정부는 전 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을 가구별로 세대주에게 지급했는데요.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사회복지 지원이 이루어질 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148~151쪽)

2. 교육정책이 입시에만 맞춰지면서 대학 진학이 목표가 아닌 학생들이나 학생이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삶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인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일하는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143~145쪽, 153~154쪽)

## 생각 넓히기

다음은 프랑스 어린이의 정치 참여 문화를 일구는 ‘어린이의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을 읽고 함께 생각해 봅시다.

어린이, 청소년들은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누리고 있을까?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을까?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프랑스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살아있는 정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어린이의회를 열고 있다.

1994년에 국회의장인 필립 세갱 의원의 제안으로 처음 개최된 어린이의회는 매년 5, 6월 중 토요일 하루에 하원 회의장인 부르봉 궁에서 열린다. 어린이의회에는 프랑스 전국 지역구에서 뽑힌 어린이의원 522명(2018년 5월 EBS 보도 기준)이 참여하는데, 모두 초등학교 5학년이다. 1994년 이후 매년 열린 프랑스 의회는 다른 나라의 어린이의회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모의의회가 아니라 진짜 법을 만드는 의회라는 점이다.

어린이 의원들이 각자 법률안을 내면 전문가들은 이 중에 10개 법안을 선정한다. 이 10개 법안을 대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우수법안 3개를 선정해 본회의에 상정하면 본회의를 통해 그해 최우수 법안을 뽑는다. 이렇게 선정한 법률안은 지역구 의원들이 넘겨받아 실제 법률로 만들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어린이 노동으로 생산된 학용품 구매를 금지하는 법률이나 고아의 권리, 아동학대 발견과 예방에 학교의 역할을 강조한 법률 등이 어린이 의회를 통해 탄생했다. 프랑스 의회는 어린이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각 지역 의원들은 직접 어린이를 만나 법안 제출을 도울 의무가 있다. 어린이들에게, 국가의 법을 만들 기회를 부여한 프랑스, 학생들은 토론과 합의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소통 기술을 일찌감치 깨우치고 있다.

참고자료: <‘뉴스G’ 진짜 법을 만드는 어린이들>, EBS, 2018. 5. 2.

<프랑스·독일 등 어린이·청소년의회도 민의 수렴>, 《세계일보》, 2011. 1. 12.

1. 우리나라에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의회와 프랑스 어린이의회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체험 혹은 참여를 경험해 보는 것과 실제 권한을 갖는 것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 청소년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따라 운영되므로 청소년의회가 없는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청소년의회 관련 조례를 검색할 수 있으며, 조례 및 각 청소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공통점:**

**‘체험’과 ‘권한’의 차이점:**

## 2.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활동하기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인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 중 하나임에도 선거에서 관련 공약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음은 2016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 분야별 1위와 2위를 차지한 공약입니다. 아래 공약을 읽고 활동해 봅시다.

#### “내가 만약 최초의 청소년 대통령이 된다면?” 설문조사 결과

##### [교육/청소년 분야]

- 1위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싶은 만큼!” 시험 축소와 입시 획일화 교육 폐지
- 2위 “8시간 이상 강제 학습은 아동학대다!” 학습 시간 줄이기

##### [사회 분야]

- 1위 “먹고 살 걱정 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
- 2위 “뭐가 무서워 숨기나?” 세월호 진상규명

출처: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2016년 11월)

<http://www.hrecenter-dl.org/5034>

1. 지금 여러분이 ‘청소년이 바라는 공약’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면,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지를 고민해 보고 항목을 추가해 봅시다.

#### ‘청소년이 바라는 공약’ 설문조사 항목

- 
- 
- 
- 
-

**들어가며**

1. “학생이 학생다워야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청소년들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까요?

[Blank yellow response area]

2. 가족, 교사 등 주변 어른(비청소년)들로부터 옷차림을 지적받아 본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Blank yellow response area]

**내용 확인하기**

1. 학생의 용의복장을 통제하는 것이 왜 청소년을 시민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할까요?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리며 적어 주세요.(175~182쪽)

[Blank yellow response area]

2. 서한울 님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인성부’와 ‘건의함’을 없애고 다른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서한울이 새로운 명칭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것 같은지 적어 봅시다.(217~219쪽)

[Blank yellow response area]

## 생각 넓히기

다음은 《인권을 만난 교육, 교육을 만난 인권》이라는 책에 실린 한 고등학교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글을 읽고 함께 생각해 봅시다.

20년이 지난 지금, 두발·복장 규제나 체벌은 그 당시에 비해 많은 학교에서 완화되거나 줄어들었지만, 학생을 통제하려는 유혹과 통제하지 못했을 때의 열등감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신학기가 다가오면 긴장되는 것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학생들을 만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학생을 만나다 보니 학생을 파악하고 장악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게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학생과 만났는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듣는 학생이었는지 아니었는지의 여부만 기억하기도 했죠.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한쪽이 다른 쪽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 만남에서 큰 벽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학생인권은 이 벽을 뚫고 인간으로서 학생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을 감시하지 않아도 되었을 때, 학생들 개개인이 얼마나 개성 있는 존재들인가 느낄 수 있었죠.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만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라면 저는 인권을 만나고 나서야 드디어 서로의 인격에 스며드는 교육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출처: 조영선, 《인권을 만난 교육, 교육을 만난 인권》, 교육공동체 벗, 2020, 11쪽

1. 학생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글쓴이는 어떤 경험을 했었나요?

2. 글쓴이는 학생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3.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 볼 때, 복장규제를 비롯해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통제가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4. 1번과 2번에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가 학생을 통제해야 하는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은 어떤 관계가 될지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 활동하기

지금의 학교생활규정은 주로 학생을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학생이지만, 규정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은 교사로 제한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에서 배포한 「민주적 학교 문화를 위한 약속문」입니다. 학교생활규정이라면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함께 지켜나갈 책임이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약속문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여러분이 만드는 '약속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작성해 봅시다.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입시경쟁교육이 아닌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교육으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 민주적 학교 문화를 위한 약속문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각각이 고유한 개성과 인격을 가진 주체적인 존재임을 알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와 민주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의 구성원인 우리(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다음을 약속합니다.

#### 평등

- 우리는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습니다.
-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위해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활동·논의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의 모든 결정 사안은 학교 내 구성원 간의 불평등한 관계로 인해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각 단위의 의견이 상충될 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협의합니다.

#### 자유

- 우리는 복장, 두발, 용모에 있어서 서로 간섭받지 않고 각자의 개성을 실현합니다.
- 서로 간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핸드폰, 인간관계, 사적 기록, SNS 등),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정치활동, 종교활동 및 대외활동의 자유에 대해서는 침해하거나 감시받지 않아야 합니다.
- 학생의 적성과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합니다.

#### 협력

- 학교의 교육은 구성원이 공동으로 협의한 교육 과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 학교 교육 과정 및 학교 운영은 모든 구성원 간의 경쟁이 아닌 평등과 협력의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합니다.

#### 책임

-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이 공동으로 대처합니다.
- 우리는 어떤 물리적, 언어적 폭력이나 혐오표현 및 차별행위도 허용하지 않으며, 이에 의해 구성원의 인권과 안전이 침해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제재해야 합니다.
- 타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 우리 모두가 방관하지 않고 적극 대처합니다.
-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 교육 계획 및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는 구성원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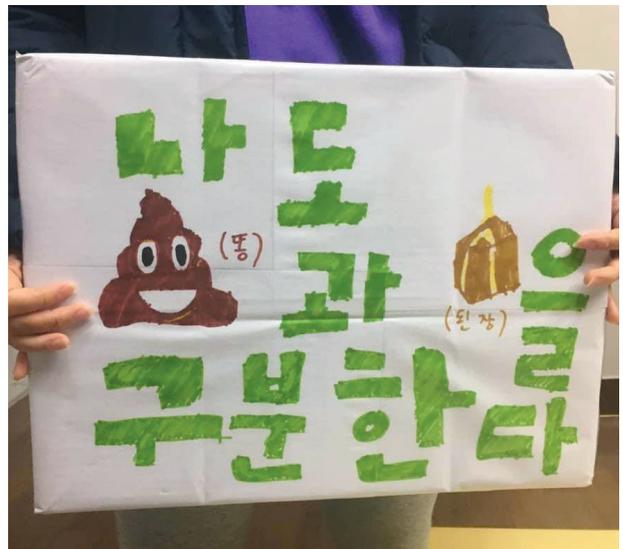
### 전체 돌아보기

‘청소년 시민’을 위한 피켓 만들기

1. 책의 내용 전체를 돌아보며, 간직하고 싶은 문장이나 이야기가 있었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문장이나 단락을 두 개 고르고,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 1 |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 2 |
|---------------|---------------|
| 소개하고 싶은 문장:   | 소개하고 싶은 문장:   |
| 이유:           | 이유:           |

2. 청소년이 시민임을 알리는 캠페인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여 이 캠페인에 가져가고 싶은 피켓을 만들어 봅시다.



예시) 청소년들이 만든 선거연령 하향 촉구 피켓 사진(출처: 교육공동체 나다)